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62 2022. 9. 16.(금) 교 육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정범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22년 9월 7일

다. 회부일자: 2022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2022년 9월 16일

(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정범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·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학교 유영위원회 유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위원의 의무 규정에 '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'과 '위원 지위를 남용한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'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O 위원의 자격상실 규정에 학부모위원의 학생 졸업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(안 제7조)

#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서성범)

#### 가. 조례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・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학교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.
- 학교운영위원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와 제32조의 학교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

특수학교에 교원·학부모·지역 위원으로 구성되어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,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, 학교의 예산과 결산 등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기구<sup>2)</sup>로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임.

- 교육에서 공정성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「대한민국헌법」제3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고<sup>3)</sup>, 「교육기본법」 제6조에서도 "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・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・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"고 규정하고 있으며4)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<sup>5)</sup>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,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,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·수련활동, 대학 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, 초빙교사 추천,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·임용·평가 등 학교운영 주요정책을 심의·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,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「국가공무원법」의 결격사유를 인용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59조제8항에는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,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

<sup>2)</sup> 첨부자료

<sup>3)</sup> 첨부자료

<sup>4)</sup> 첨부자료

<sup>5)</sup> 첨부자료

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학교 교육활동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・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.
- 안 제7조에 학생이 졸업한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생이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별로 학교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서로 다른 위원의임기로 야기될 수 있는 혼돈을 막고 공백 없는 학교운영위원회개최를 통하여 내실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판단됨.

#### 다. 종합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

#### [첨부자료]

- 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 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
  -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(기능) ①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2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-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- 4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- 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- 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7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- 8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- 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· 운용 및 사용
- 10. 학교급식
- 11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- 12. 학교운동부의 구성 · 운영
- 13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- 14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(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.
-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2) 「대한민국헌법」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-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
  -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
  - ④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- 3) 「교육기본법」제6조(교육의 중립성)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, 정치적·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4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(정치 운동의 금지)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
  -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
  - 2. 서명 운동을 기도(企圖) · 주재(主宰)하거나 권유하는 것

- 3.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
- 4.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,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
- 5.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
-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,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<u>대통령령</u>등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5. 18.>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  -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"(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)"를 "(운영위원회의 설치)"로 한다.

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.
-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."를 "경우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1.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·전학·졸업·퇴학하는 경우,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

- 3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
- 4.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
- 5.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) ①	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~
~ 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의 의무 등) ① ~ ③	제6조(위원의 의무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
	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
	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
	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
	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.
<u>〈신 설〉</u>	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
	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7조(위원의 퇴임 등) 위원이 다	제7조(위원의 퇴임 등)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	
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	<del></del> .
실한다.	
1.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·	1.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·
전학·졸업·퇴학, 교원위원의	전학·졸업·퇴학하는 경우,
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	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
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	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
위원은 당연 퇴임된다.	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
2.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	2
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	
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	
이 있는 것이 발견된 <u>경우에는</u>	<u>경우</u>
자격이 상실된다.	

<u>〈신 설〉</u>	3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
	<u>경우</u>
<u>〈신 설〉</u>	4.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
	<u>경우</u>
<u>〈신 설〉</u>	5.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
	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## 관계 법령

#### □대한민국헌법

[시행 1988. 2. 25.] [헌법 제10호, 1987. 10. 29., 전부개정]

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
#### □ 교육기본법

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56호, 2021. 9. 24., 일부개정]

제6조(교육의 중립성)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, 정치적·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#### □ 초・중등교육법

[시행 2022. 7. 21.] [법률 제18298호, 2021. 7. 20., 타법개정]

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<개정 2012. 3. 21.>

-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 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 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

-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2. 3. 21.]
- 제31조의2(결격사유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
  -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- 제32조(기능)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사항은 제외하고,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. 〈개정 2021. 9. 24.〉
  -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 - 2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  -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  - 4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  - 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  - 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- 7. 「교육공무원법」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. 평가 등
  - 8. 「교육공무원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  - 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· 운용 및 사용
  - 10. 학교급식
  - 11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  - 12. 학교운동부의 구성 · 운영
  - 13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- 14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삭제 <2021. 9. 24.>
  -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- 제33조(학교발전기금)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2. 3. 21.]
- 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 -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#### □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22. 7. 21.] [대통령령 제32627호, 2022. 5. 9., 타법개정]

- 제58조(국·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중 국·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 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이하 제62조까지 "국·공립학교"라 한다)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 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(이하 이 절에서 "위원회규정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00. 2. 28.〉
  - 1.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: 5인이상 8인이내
  - 2.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: 9인이상 12인이내
  - 3.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: 13인이상 15인이내
  - 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1. 3. 18.〉
  - 1. 학부모위원(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: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

- 2. 교원위원(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: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
- 3. 지역위원(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,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: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
-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·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(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)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7. 4. 12., 2010. 6. 29.〉
- 1. 학부모위원 :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
- 2. 교원위원 :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
- 3. 지역위원 :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〈신설 2011. 3. 18.〉
- 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  -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9. 15., 2020. 2. 25.〉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 〈신설 2015. 9. 15.〉
-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〈개정 2000. 2. 28., 2015. 9. 15., 2020. 4. 7.〉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 〈신설 2020. 4. 7.〉
-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〈개정 2015. 9. 15., 2020. 4. 7.〉
-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<개정 2015. 9. 15., 2020. 4. 7.>
- ⑧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 〈신설 2011. 3. 18., 2015. 9. 15., 2020. 4. 7.〉
- 제59조의2(회의 소집)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, 회의 개최 전까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16. 10. 18.〉
  - ③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,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1. 3. 18.]